



## 技術士의 活用施策과 關聯國內實定法條項에 관하여

A legal activ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 and relative stipulation of the existing law and its decree in Korea

〈技術士法 시리즈 第4誌〉

金 岦 根\*  
Kim, Suen Guen

### 〈主要內容目次〉

- |                             |                |
|-----------------------------|----------------|
| 1. 머리말                      | 5. 法條項 改正案     |
| 2. 技術士의 活用施策의 法條文 解說(用語풀이含) | 6. 맺는말         |
| 3. 主要實定法의 具體的 是正 範圍와 그의 對策案 | 7.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 |
| 4. 先進國의 技術士法의 參考事項          |                |

### 1. 머리말

技術士法案이 年內(11月 4日) 國會通過后 制定公布되면 卽時 當會는 過去와 달리 積極的으로 關聯國內實定法의 條項에 對하여 改定補完 혹은 條項의 一部廢棄 혹은 刪除條項 등을 檢討하여 當局에 주로 技術士法案 第3條(技術士의 職務)와 第5條(技術士活用施策) 등을 根據로 하여 그 活用施策을 實定法條項에 條文化하는 일이 許多하게 法施行上 殘存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現在 國會에서 지난 11月 4日 通過된 技術士法案은 一種의 「技術士職務法」이라 呼稱할 만큼 資格試驗만은 實定法인 國家技術資格法에 依存하게 되여있는 까닭이라 할 수 있다. 國內實定法中 資格과 職務가 分離된 法은 아마 이 法이 처음있는 일로 될 것이다. 技術士會員의 宿願으로서 母法을 갖게 된 것만으로

當分間 滿足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母法으로 技術士 活用施策을 最大限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技術士會發足以來 專門的으로 關聯法規를 法律專門家에게 委嘱치 않고 自體技術士 스스로가 研究檢討하는 것도特異하다 할 것이다.

回顧하건대 舊技術士法 第25條(技術士의 活用)나, 國家技術資格法 第10條(技術資格取得者優待) 등의 條文은 文章外觀上 그럴듯하지만 其間의 經驗에 비추어 보면 優待아닌 薄待를 받아 왔으므로 此際에는 (心機一轉하여) 優待받는 法施行上風土를 技術士自身이 自覺하여 法制化努力闘爭에 全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 2. 技術士의 活用施策의 法條文解說(用語풀이含)

이것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1) 第3條(技術士의 職務)』

\*土木(港灣 및 海岸技術士), 韓進開發公社技術顧問,  
(社)韓國技術士會 常任理事 技術士法立法推進委員會 先任幹事

- (e) 第5條(技術士活用施策)
  - (f) 第12條(技術士管理에 관한協議)
  - (g) 第14條(技術士會의業務)
- 活用施策上의 主要한 그 方案을 적어 보기  
로 한다.

(法)第3條(技術士와 職務) ① 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研究·設計·分析·調查·試驗·施工·監理·評價·診斷·事業管理·技術判斷·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詢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 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规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规定에 의한다.

③ 第1項에 规定된 科學technology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위 第3條 ①項의 計劃·研究… 等』

15個의 職務中 各職務와 實定法關聯事(條)項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計劃」이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事業 或은 事案에 關하여 他人의 委託을 받고 基本方針(基準)에 合致되는 各種 事項을合理的·組織的으로 어떠한 工程上의 展開를 할 수 있는 情報化方案(法)을 作成하는 것이다.

#### • 國內實定法

- ① 國土利用管理法
- ② 都市交通整備促進法
- ③ 建設業法施行令 第39條
- ④ 工產品品質管理法施行令 第21條
- ⑤ 海外建設促進法 第13條
- ⑥ 地方工業開發法 第4條
- ⑦ 都市再開發法
- ⑧ 工業發展法
- ⑨ 都市가스事業法
- ⑩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研究」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어떠한 事業 혹은 事案에 關하여 他人 委託을 받고 科學技術에 關한 專門的 應用能力을 開發하여 事業化·企業化·情報화·工場化·創造改良化·實用

新案 및 特許化·知的所有權化 등을 工程化하여 하나의 集大成案件으로 作成된 것을 말한다.

#### • 國內實定法:

- ① 建設技術管理法 第16條와 第17條
- ② 建設技術管理法 第7條(韓國建設技術研究院)
- ③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13條(交通開發研究院)
- ④ 海洋開發基本法 第17條와 第20條
- ⑤ 產業技術研究組合育成法 第14條
- ⑥ 原子力法 第9, 10, 33條
- ⑦ 韓國科學技術院法 第12, 15, 19, 20, 21條等
- ⑧ 科學技術振興法 第7, 8條
- ⑨ 技術開發促進法 第4條와 第8條의 第1項 및 第10條 第2, 3項 등
- ⑩ 通信研究院法 第6條
- ⑪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 「設計」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事業 혹은 事案에 關하여 他人의 委託에 依하여 設計規(基)準 및 關聯 示方書에 合致되도록 各種 事項을合理的·經濟的·力學的 安定을 土臺로 最適化 設計로 設計圖書를 作成하는 것을 말한다.

#### • 國內實定法事例:

- ① 建築土法 第2條(定義) 第3號 『設計하는…』와 第4條(設計 또는 工事監理 등) 그리고 第19條(業務內容) 第1項 『建築土는 建物의 設計와 工事監理에 關한 業務를 行한다.』
- ② 工業標準化法 第2條 第6項
- ③ 建設技術管理法 第23條(建設工事設計 등의 審議)와 第34條(設計 및 施工基準)
- ④ 英國 土木學會 P. E. 試驗規程
- ⑤ Project Engineering의 分類中 小分類에 서 “設計”(日本機械工業聯合會發行 「エンジニアリング確立のために」)
- 「分析(Analysis)」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事業 혹은 事案에 關하여 他人의 委託에 依

하여 設計規(基)準 및 關聯示方書에 어느 程度 合致되는가의 與否를 細密하고 精(正)確하게 多方面 · 多角度로 分析하여 信賴性이 있는 統計性資料로 作成되는 것을 말한다.

• 國內實定法事例 :

- ① 工業標準化法 第2條 第4項 『鐵工業品에 關한 試驗 · 分析 · 鑑定 · 檢查 · 測定方法 …』
- ② ⑦ 工事費의 見積分析 ] (R-11 要參照)  
    ⑤ 工事管理上의 生產分析
- ③ 化工技術士 分野의 職務上 定量分析, 定性分析 등이 있다.
- ④ 建設工事에 있어서 基礎地盤(地質)調查 를 通해 土質調查 · 分析 · 工學的試驗 등 이 있다.
- ⑤ 콘크리트工事用 骨材의 篩分析(체갈림) 등이 있다.
- ⑥ 工學上 各種 材料의 分析試驗 등 許多하다.

「調查(Investigation or Survey)」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事業 혹은 事業에 관하여 他人의 委託에 依據하여 妥當性調查, 基本調查, 細部調查, 엔지니어링事業調查, 컨설팅(Consulting) 調查,豫備調查(Preliminary Survey), 投資前調查, 現場調查, 市場調查, 技術調查, 經濟調查(Profitability), 土地調查, 地質(盤)調查, 調查測量, 調查分析 등 多方面 多角度調查로서 技術士職務 遂行上의 基本調查資料로 作成되는 것을 말한다.

• 國內實定法事例 :

- ① Project Engineering 定義에 依한 調查
  - ②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關한 法律 第5條(調查評價의 基準)
  - ③ 建築士法 第19條 第2項 第1號
  - ④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7條
  - ⑤ 工產品品質管理法 第18條
  - ⑥ 海外建設促進法 第29條
  - ⑦ 產業基地開發促進法 第3條
- 「試驗(Test)」<sup>o</sup>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事業 혹은 事業에 關하여 他人의 委託에 依據하여

鑛工業品의 標準化試驗, 裝備 및 各種 機械 · 機具 · 機器의 性能試驗 및 選定試驗, 管理試驗, 檢查試驗, 材料의 材質試驗 그리고 鑑定試驗, 企業化 및 工業化試驗 등 多方面 多角度 試驗으로서 技術士職務 遂行上의 試驗資料로 作成되는 것을 말한다.

• 國內實定法事例 :

- ① 建設工事品質試驗規定 第2條
- ② 工業標準化法 第2條 4項
- ③ 建設技術管理法 第24, 25, 26條 등
- ④ 技術開發促進法 第8條의 2第1項등

「施工(Construction)」이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어떠한 事業(業) 혹은 建設工事施行過程에서 該當工事에 대하여 設計圖書대로 工事を 進行시켜서 全體工事의 工程을 마무리 짓는 일을 말한다.

• 國內實定法事例 :

- ① 建設業法
- ② 建設技術管理法

「生產」이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어떠한 企業體 혹은 工場에서 그 規模, 工產品의 內容 및 規格에 맞추어서 製品이 產出되어 工產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國內實定法事例 :

- ① 工業發展法

「監理」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어떠한 事業 혹은 事業에 대하여 他人의 委託에 依據하여 設計圖書나 事業(業)基準대로 施工 혹은 施行되는가의 與否를 確認하고 工事施工者나 事業(案)施工者를 指導하는 行爲를 말한다.

• 國內實定法事例 :

- ① 建設技術管理法
- ② 建築士法

「評價(Evaluation)」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어떠한 事業(Project)이나 事業의 工程 및 展開內容과 狀況을 事業(案)基本方針이나 設計施工基準과 對比해서 技術의 立場에서 經濟的 妥當性과 設計施工基準上의 對照對比되는 諸問題點 등을 價額과 評點(技術的)을 合算하여 作成되는 分析 · 檢討內容이 되는 것을 事

業 및 事業上公正·正確·信賴性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國內實定法事例 :

- ① 施工評價(八達大橋工事)
- ② 建設技術管理法 第36條(施工評價 등)
- ③ 土地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鑑定評價士」
- ④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鑑定評價(公認鑑定士)」
- ⑤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條 「交通影響評價」
- ⑥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環境影響評價」
- ⑦ 環境技術士의 業務範圍(R-9要參照)  
「診斷(Consultation)」이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어떠한 事業上 構築되었거나 혹은 構築되고 있는 한 建築物의 施工過程上 露出된 不實化를 設計施工基準에 그 合致 與否를 對照하여 그 安全性과 信賴性의 適合度를 確認(再計測을 通하는 境遇도 있을 수 있으며)하고 安全性診斷의 判斷을 委託받은 者가 作成하는 한 現場作業의 하나이다.

• 國內實定法事例 :

- ① 產業安全保健法
- ② 安全診斷事業評價業體許可(勞動部)
- ③ 土木構造技術士의 業務範圍(R-9要參照)  
「事業管理(Project Management)」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他人의 委託에 의하여 어떠한 事業의 全般的인 管理를 事業計劃技術(Project Engineering), 計劃(投資調查), 妥當性調查檢討(Feasibility Survey), 調達, 施工, 性能試驗, 運轉, 補修, 完工, 引渡 등에 대한 廣範圍한 管理로서 한 事業을 完成시키는 것을 말한다.

• 事例 :

- ① 化工技術士의 業務範圍(R-9要參照)  
「技術判斷(Technical Determination)」이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어떠한 事業 혹은 事業에 관하여 技術士의 專門技術로 判斷을 내려서 技術上의 決定的인 結論으로 懸案 問題點을 解決하는 方法의 하나를 말한다.

• 事例 :

- ① 工業用水水質基準(工業振興廳)에 의거한 水質試驗結果의 技術判斷

• 技術仲裁條項

- ① 仲裁法 第18條 「仲裁規則의 承認」
- ② 建設業法, 電氣工事業法, 電氣通信工事業法, 著作權法,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등에 條文化되어 있는 紛爭調停和解를 仲裁로 格上시키는 일 등 其他

「諮詢(Advisory Consultation)」이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어떠한 事業이나 혹은 事業에 관하여 技術士職務能力을 上台로 專門的知識을 갖고 委託者에게 忠告的 建議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 「技術諮詢」條項

- ①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環境保全諮詢委員會)
- ② 「建設工事監理를 위한 標準契約書」第39條

「指導(Guidances or Direction)」이라 함은 技術士 責任下에 他人의 委託에 의하여 어떠한 事業 혹은 事業에 관하여 技術士職務上 그 專門的知識과 技術로 어떠한 基本指針 혹은 設計施工基準에 따른 合理的인 事業(事業)引導로서 事業(事業)의 完成(工)을 期하도록 하는 作業을 말한다.

• 「技術指導」條項

- ① 中小企業振興法 第25~28條 및 第32條  
『(法) 第5條(技術士活用施策) ① 政府는 技術士의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知識이 產業技術發展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내용이 포함된 技術士活用施策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1. 技術士의 長·短期需給展望 및 計劃
  2. 技術士의 活用을 嘉勵하기 위한 施策
  3. 技術士의 육성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한 施策
  4. 기타 技術士職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活用施策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

令으로 정한다.』

이 法 第5條 ①項 2와 同第12條2와 直接關聯이 있는 條項들이다.

参考事項:

· 「科學技術振興法」 第7條[人力開發計劃의樹立과 指針]에 技術士活用施策의 條文을 插入하여야 한다고 본다.

· 舊技術士法 第25條(技術士의 活用)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 중 專門的인 技術을 必要로 하는 事務를 指定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게 技術士의 活用을 命할 수 있다….

1. 國家 · 公共團體 및 政府管理企業體가 營爲하는 重要한 事業

2. 長期經濟開發事業

3. 外資導入事業中 重要한 事業

4. 基他 特히 重要한 公益事業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以下 省略)』

· 國家技術資格法 第10條 技術資格取得者에 대한 優待에는 ① 就業保障 ②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營業의 許可 · 認可에 優待措置 ③ 技術資格取得者에 대하여 事業主가 優待措置하는 等의 條文化에 그치고 있다.

위 參考事項과 더부러 積極的으로 全會員이 銳意注視할 法條項은 ①項의 2, 3, 4 등을 根據로 技術士의 活用施策과 그 育成發展施策은 實定法範圍內에서 無限定으로 施策法規化를 講究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例컨대 技術士의 育成基金造成과 會員相互間의 共濟事業을 위해 「技術士共濟組合法案」 같은 것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會員各者가 自覺해야할 留意点은 母法上의 技術士活用施策과 優待條項이 法制化되었다해서 坐視한채로 있어서는 그 惠澤이 제대로 굴러 들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技術士會內의 業務推進機構로서 새 定款에 條文化하여 “法制檢討研究委員會”가 常設運營되어야 한다는 것을 建議한다.

『(法) 第13條(技術士의 관리에 관한 協議)』

科學技術處長官은 技術士管理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사항에 관하여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1. 技術士事務所의 登錄 및 관리에 관한 종요사항
2. 技術士의 育成 및 活用에 관한 사항
3. 기타 技術士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指摘事項:

科技處案과 많이 달라진 法條項이 이 條項이며, 技術士管理委員會設置가 完全히 刪除되고 科技處와 主務部長官과 技術士에 관한 事項을 協議만 하게 되어 있다. 舊技術士法 第5章에 技術士管理委員會에 관한 條項이 있었고, 日本技術士法(1983年 第3次 改正分) 第5章(第48條~第53條) 技術士審議會가 있는데 왜 이렇게 法制處가 格下縮小시켰는지 理解가 안가는 條項으로 變色하였다.

부득이 이 條項은 原案과 많아 變色하였지만 施行令에 具體的으로 協議機構를 갖도록 條文化하여 技術士活用施策上의 機動力を 發揮하는 核心體를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우이 國家技術資格法 이외에 法的技術資格을 定着化할 수 없는데도 不拘하고 소위 高級技術者의 定義를 單純業務法에서 母法의 根據없이 施行令附表에 條文化하는 일을 止揚亘록 하는 協議對象의 第1號가 될것이다.

기술士의 管理에 관한 協議對象範圍는 너무나 많고 지금 여기에 詳述할 立場이 아니므로 法施行確定後에 公表할 것이다.

『(法) 第16條(技術士會의 業務) 技術士會는 다음 각號의 業務를 행한다.

1. 技術向上에 관한 調査 · 研究
2. 產業技術指導 및 情報交換
3. 技術士의 職務開發과 能力向上
4. 技術士의 品位保全
5. 技術士의 福祉增進 및 권익옹호
6. 主務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定款이 정하는 業務』

#### 参考事項：

- 舊技術士法에는 技術士會의 業務條項이 없었다.
- 最新 日本技術士法 第55條에 위 條項에 該當하는 部分의 文章이 있다.
- 技術士會가 이 法을 根據로 ① 技術士管理協議機構(第12條) ② 技術仲裁機構(第3條와 第5條) ③ 技術情報센타(第3條, 第5條, 第14條) ④ 技術士信用 金庫 등 設立할 수 있다.(第3條, 第5條, 第14條) ⑤ 技術士福祉厚生事業機構 ⑥ 技術士終身保險 혹은 老後年金制 實施 ⑦ 技術士職務를 위한 自動化, 情報化設備資金 積金制 實施등 其他 考慮할 수 있다.
- 技術士會의 業務가 法制化 된것을 根據로 그 業務의 範圍가 飛躍的으로 開發促進되는 法의 基盤위에서 各種事業이 發展케 될 것이 期待된다.

過去에는 想像치도 못하던 事業展開가 되므로 因해 有資格者 會員加入의 倍增化는 不論 事業이 活性化되므로서 會員의 보람과 持持를 갖게 되는 날이 기필코 도래할 것이다.\*

### 3. 主要實定法의 具體的 是正範圍와 그 외 對策案

別添표 表-1, 技術士의 活用施策과 直接關聯된 國內實定法은 十余種에 達하며, 이法施行令制定公布時나 혹은 適切한 時期에 關聯法의 施行令은 技術士活用에 관한 法條文에 의거하여 即刻 改正作業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의 市場性과 該當技術士會員의 關與度가 高은 建設技術管理法 技術用役育成法,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손이 닿아야 할 것이다.

技術士法立法推進에 힘을 消盡한 나머지 이 점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過去의 前轍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舊技術士法이 實存中인 1963년 1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磨法이 될 때까지 技術士會

\* 技術士法 第15條(技術士會會員)에는 모든 會員이 加入토록 되어 있다.

員들은 잘 모르고 어떠한 措置를 取해야 하는지 傍觀視 또한 輕視한 傾向에 있었든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判異하게 달라졌으므로 行政當局의 立法, 法運用등 銳意·注視하여 技術士活用施策의 萬全을 기해야 할 것이다.

### 4. 先進國의 技術士法上의 參考事項

#### 4. 1 標準約款作成(制定)原則

近二十年의 歷史를 가진 技術士가 그간 公認된 標準約款(Standard Contract Codes)없이 受注事業을 施行해 왔다는 것은 技術士活用施策上 必須要件이라는 것을 認識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先進化·合理化·標準化를 부르짖고 있는 此際에 晚時之嘆이 되나, 懸案中인 技術士法의 制定公布를 앞두고 標準約款事業을 早速히 展開하여야 할 것이다.

別添된 表-2에는 (i) 標準約款作成原則 (ii) 標準契約書約款의 種類 (iii) 標準契約上의 共通適用條項(目)등으로 되어 있다.

위 事業은 年次의으로 作成, 制定 政府의 承認·適用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士會가 過去 이러한 活用施策의 一環이 되는 事業을 構想한바 없었다는 것은 痛嘆할만한 일이다.

#### 4. 2 先進國의 標準約款

西歐諸國에서는 技術士制度의 發達과 더불어 오래前부터 各種 標準約款이 該當學會나 技術士團體別로 制定適用되어 왔던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事例로써 表-3과 같이 美國의 技術士會(N.S.P.E.)와 建築士會가 制定한 技術士職務에 관한 標準約款의 名稱만 적은 것이다.

表4는 美英兩國에서 쓰고 있는 Engineering Service의 主要契約方式別對比表로서 이에 따른 標準約款이 세각기 制定適用되어 있다.

表5와 6은 FIDIC(國際컨설팅엔지니어 聯

表 1 技術士의 活用施策과 直接關聯된 國內實定法 目錄表(SGK)

No.	法名稱	法號	制定公布日	諮詢法條文內容
1	技術用役育成法	2474	1973.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2條 第1項(技術用役의 定義)</li> <li>· 第3條(登録) 4. 項(1976. 12. 31 本條改正)</li> <li>· 同施行令 第5條(用役業의 登錄基準) 1. 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用役業의 登錄基準은 別表4와 같다.</li> <li>· 別表4(用役業의 登錄基準) 備考欄中 高級技術者는 …(以下省略)</li> </ul>
2	建設技術管理法	3934	1987.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2條(定義) 3. 建設技術用役</li> <li>· 同施行令 第4條와 關聯된 別表1 및 別表3 備考欄에는 高級技術者는 … (以下省略)</li> </ul>
3	仲裁法	1967	1966.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18條(仲裁規則의 承認) 2. 項 新設로 技術仲裁規程이 條文化되어야 한다.</li> </ul>
4	建設業法	4075	1988.12.31 (13차 改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32條(委員會의 設置機能) ① 建設業에 관한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調停 및 仲裁〉條文補完推進</li> </ul>
5	電氣工事業法	3294	1980.12.24 (2차 改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3章 電氣工事業調停委員會(第14~17條)에 仲裁條項插入推進</li> </ul>
6	電氣通信工事業法	3950	1987.11.28 (4차 改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17條의 2(電氣通信工事業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 등) 및 第17條의 3(調停의 申請 등)에 仲裁條項補完推進.</li> </ul>
7	著作權法	3916	198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7條(著作權에 관한 審議 및 紛爭의 調停)(第81條 第90條)에 仲裁條項 補完推進</li> </ul>
8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	3920	198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行の 法 第29條 改正案은 著作權法의 第83條~第90條와 같다. 즉 第29條의 2(機能)은 著作權法의 第82條(機能)과 같고 以下 第29條의 9까지 同一하다. (出處: 전자신문 92. 6. 8.)</li> </ul>
9	產業安全保健法	3532	198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13條(安全管理者)와 第2條(定義): 技術士活用을 위한 安全管理者의 定義補完이 必要하므로 條項補完推進</li> </ul>
10	有害化學物管理法	4261	1990.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8條(化學物質審查團): 이 條項에 該當 技術士活用條項補完이 必要하다.</li> </ul>
11	소프트웨어開發 促進法	3984	1987.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5條(소프트웨어開發事業) 第1項 5號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用役業者: 技術士法에 의한 登錄·開設技術士事務所로 改訂要</li> </ul>
12	海外建設促進法	3316	198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5條(海外建設業의 免許) 2. 項의 3 要改訂</li> </ul>
13	獨占規制 및 公正去 來에 관한 法律	3320	198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技術士法 第3條(技術士의 職務)에 附帶하여 必要한 技術導入契約時: (이 法 第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및 第24條(國際契約의 締結申告))</li> </ul>

合會)가 制定한 技術士職務(用役), 土木·建築·機械(플랜트 포함) 등에 且한 標準約款의 名稱概要를 적은 것이다. 이 것과 對比할 參考資料로써 美國(3個團體制定)의 建設工事標準一

般契約條件의 名稱內容이 적여 있다.

表7은 日本政府, 各種有關團體가 制定하여 適用하고 있는 約款名稱識別表이다.

特異한 것은 建設工事의 紛爭解決에는 仲裁

表 2 技術士 職務遂行上 必要充分條項을 갖는 標準約款一覽表(SGK)

A. 表準約款 作成原則

- 1) 技術士會制定 政府公認의 標準契約書로 制定  
活用케한다.
- 2) 技術士職務의 代價는 政府制定承認의 規準에  
따른다.
- 3) 技術士로서 職務遂行에 關聯된 履行保證保險  
도 함께 考慮할 수 있다.
- 4) 紛爭의 解決에는 技術仲裁規定을 適用한다.

第19條( 다른 代價의 受領禁止 )

第20條( 專門技術職務의 提供 )

第21條( 設計의 變更 )

第22條( 是正指示 · 事業進行 혹은 工程執行中  
止命令 )

第23條( 應急措置 )

第24條( 作業保險 )

第25條( 竣工檢查等 )

第26條( 著作權 및 知的所有權 )

第27條( 裝備等의 返還 )

第28條( 秘密維持 )

第29條( 受注者 의 責任 )

B. 標準契約書 約款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1) 技術士職務遂行契約書
- 2) 技術士被雇傭契約書
- 3) 建設工事監理用契約書
- 4) 技術士事業管理契約書

第3章 職務의 代價

第30條( 契約全額의 內譯 )

第31條( 先給金 )( Advance Payment )

第32條( 支給 및 그 方法의 保證 )

第33條( 支給遲延利子 )

第34條( 既成代金과 殘金 )

第35條( 追加의 代價 )

第36條( 代價의 調整 )

第37條( 褒常金 )

第38條( 紛爭對象項目 )

第4章 發注者的 權利와 義務

第39條( 諮問權과 權利行使 )

第40條( 代理人의 派遣과 交替要求權 등 )

第41條( 資料 等의 提供 )

第42條( 租稅公課金 등 )

第43條( 決定事項의 早速通知 )

第44條( 對外的協力과 推進 )

第5章 紛爭의 解決

第45條( 適用法規 )

第46條( 仲裁 )

第2章 受注者の 權利와 義務

附屬書一式

第18條( 專門的知識 · 法令規程의 遵守 )

表 3 美國技術團體의 技術士職務에 관한 標準約款(名稱) 一覽表(SGK)

No.	約款名稱英韓文	作成機構	約款概要
1	엔지니어링과 建築士業務契約 (Contracts for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포osal과 그 承諾書式에 의한 契約方式(Lump - sum fee)</li> </ul>
2	發注者와 엔지니어와의 技術士 職務標準契約書式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Engineer for Professional Services)	美國(N.S.P.E.)技術士會 制定(工事額數의 比率과 日當費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ol. 12 No. 2 Jure 1979 기술 誌에掲載된바 있음.</li> <li>文書形式이다.</li> <li>紛爭은 仲裁에 依附한다.</li> </ul>
3	發注者와 엔지니어와의 建築 事業契約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 Architect)	美國建築士會制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엔지니어링 業務를 包含한 工事 費料率基準方式</li> <li>文書型式이다.</li> <li>紛爭은 美國建築士會의 標準仲 裁節次規定에 따른다(1961).</li> </ul> <p>※只今은 建設業仲裁規程에 따른 다(AAA).</p>
4	全上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建築士業務費基準에 費用加算方 式</li> <li>其他 No.3과 같다.</li> </ul>

表 4 美·英兩國의(技術用役費) Engineering Services의 主要契約方式比較表(SGK)

契 約 方 式		長 點	短 點
1)	實地純工事額比率基礎費用計算 式(Fee Based on a Percentage of the Actual Net Construc- tion Cos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便利·多用</li> <li>業務別料率規定有함</li> <li>工事內容變更時自動的으로 技 術用役契約變更없이 調整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工事費推定의 正確性 困難</li> <li>Engineer의 詐欺 있음을 수 있 음.</li> </ol>
2)	工事見積額比率基礎總額計算式 (Lump-Sum Fee Based on a Percentage of the Estimated Construction cos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工事實額과 見積工費의 差가 있어도 不變更됨.</li> <li>用役費事前正確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工事額見積錯誤 있음을 수 있 음.</li> <li>建設工事變更時마다 用役契 約を 變更되어야 한다.</li> </ol>
3)	定額加算固定費方式 (Cost plus fixed fe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般管理費만 實費清算(精 算) 方式이다.</li> <li>用役業務가 事前에 未確定일 때 適用有利하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繁雜한 經理手續과 會計記錄 이 必要하다.</li> <li>두 개以上의 Project를 同時 에 取扱時 Cost分類에 難點이 있다.</li> </ol>
4)	最大限度額保證定額加算固定費 方式(Cost plus fixed fee with a Guaranteed Ceil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用役費實費로 支拂임</li> <li>發注者有利, 費用節減可能</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最大限度額에 安全幅要設定</li> <li>限度額超過時業者 不利함</li> </ol>

5)	時間料率基礎費用計算式 (Fee Based on Time rate)	1. 個人에 依한 用役諮詢에 多用 便利함. 2. 最低限度의 Retainer fee와 Per Diem決定方式이다.	1. 廣範圍한 用役業務適用 不可 能함
----	---	---	-------------------------

表 5 技術用役用, FIDIC(國際建設工程聯合會) 制定最新(1979 및 1980)

標準約款(名稱) - 覧表(SGK)

No.	類型 및 名稱	全文內容	備 考
1)	FIDIC IGRA 1979 P.I(Preinvestment Study)(基本 및妥當性調查設計用役)	本文 9章 58節 및 附屬書 및 書式(A~D)	§ 2.6.1. 仲裁條項이 있다.
2)	FIDIC IGRA 1979 D&S(Design and Supervision of construction of works) (建設工事의 設計 및 監理에 관한…)	本文 9章 64節 特別章 9節 附屬書式(A~C)	§ 2.6.1. 仲裁條項이 있다.
3)	FIDIC IGRA 1980 PM(Project Management)(事業管理約款)	本文 9章 64節 特別章 9節 附屬書 A~C書式	§ 2.6.1. 仲裁條項이 있다.

- 註記 : 1) Vol. 17 No.2 June 1984 技術士會誌 pp.46~67 「FIDIC制定技術用役에 관한 最新標準約款 IGRA」等이掲載되어 있다.  
 2) (社)韓國技術用役協會가 1984年 3月에 制定한 “建設工事監理를 위한 監理契約書는 FIDIC의 IGRA 1979 D&C를 標本으로 作成한 것으로 풀이된다.

表-6: FDIC 制定 · 土木 · 建築 · 機械工事契約約款名稱 - 覧表(SGK)

Conditions of contract(international)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1976年 第3改訂版(英·獨·西·아랍 語版公式翻譯되었음)	全文 72條 및 附屬書	第67條에 仲裁條項이 있다.
Conditions of Contract(international) For Electrical Mechanical Works(Including erection on site) (電気·機械·電氣工事契約條件)(國際標準)(現場 組立工事包含) 入札 및 契約書式附 〈附錄〉美國(3個團體制定)	全文 55條 및 附屬書 1963年 初版 1980年 第二項	第67條에 仲裁條項이 있다.
(Standard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建設工事標準一般契約條件 全文 17條	第16條仲裁條項 있다.

\* 이 외에 美國建築士協會가 制定한 建設工事契約一般條件(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이 있다.

節次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日本政府自體보다도 關聯團體가 制定한 標準約款을 政府認定 혹은 承認制度下에 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工事에 관한 標準約款뿐이 고 技術士職務에 관한 契約은 아직 것 制定活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國際社會에서 汎用的으로 많이 活用되고 있는 標準約款의 基本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英國土木學會(ICE)가 制定適用하고 있는 ICE의 標準約款\*으로서 일본에서 翻譯된 것만 例示할 것 같으면 「Engineering Law and ICE Contracts」, 「Civil Engineering Procedure by ICE」 등이 있고, 仲裁에 관해서는 「Russell on Arbitration Eighteenth Edition by Anthony Walton Q. C., London Stevens & Sons Ltd., 1970.과 Handbook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7 發刊物等이 있다.」 또, 契約約款으로는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Standard Forms, I. N. Duncan Wallace, London Sweet

& Maxwell」와 「Law and Practice of Building Contracts, D. Keating(Third Edition) London Sweet & Maxwell 등 기타十余卷의 契約約款解說의 專門書籍」이 英國에서 發刊되어 있다.

## 5. 法條項改正案

### 5. 1 技術士會案(國家技術士法)中削除된 條項

1989年 9月 立法案이 審議過程에서 제거된 條項은 第2章試驗(資格), 第27條[技術士補業務의 制限], 第5章 技術法人 第6章 技術士管理委員會, 第49條[共濟事業團體] 第50條[技術振興基金] 등이다.

도리켜보면 第2章은 純職務만으로 法制化된 技術士法案으로 立案되었기에 部處間에 協議上不可避하게 된 것으로 推定되나, 國家技術資格法은 1973年 12月 31日 制定公布된 이후 約 20年이 經過한 오늘날 法의壽命(裝備의 耐久年數처럼)을 다하였고, 時代의in 變遷(十年有變化江山이 두번이나 되었다)에 副應하지 못하고 있는 諸要因, 向後, 改正作業을 通해서 技

表-7: 日本建設工事標準請負契約約款名稱表(SGK)

約款名稱	制定月日	制定機關名	備考
1) 公共工事標準請負契約約款	1950. 2.	中央建設審議會	現在까지 6次改定한바 있음
2) 民間建設工事標準請負契約約款	1951. 2.	~	(甲)大型工事, (乙)小型工事
3) 建設工事標準下請契約約款	1950. 9.	~	2次改正함
4) 四會連合協定·工事請負契約約款	1923. 8.	日本建築學會·日本建築家協會 日本建築協會·全國建設業協會	4次改正함. 民間工事用
5) 工事下請基本契約約款 및 個別工事 工事下請契約約款	1977. 11.	全國建設業協會·建設工 業經營研究會	建設省計劃局建設業課認定
6) 工事請負契約書와 制定에 관하여	1973. 4.	建設省厚發第100號	
7) 工事請負契約書에 運用基本에 관하여	1973. 4.	建設省厚發 第129號	

備考 ① 日本建設業法(1944. 5. 24法第100號 第14次 改正)

第3章의 2: 建設工事의 請負契約에 관한 紛爭의 處理: (第25條가 16개項으로構成됨)  
第25條의 15(仲裁開始)

② 日本民事訴訟法 第8篇 仲裁手續(節次) (第786條~第805條)等이 있다.

術士의 法的規制를 이 法에서 脫皮分離되어 技術士法(案)은 名實共허 資格과 職務가 統合된 單一法으로 改正補完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法 運營上 잘못된 條項으로서 第5條[類似檢定의 禁止]와 第10條[技術資格者에 대한 優待] 등에는 違法(他部處에 의한)事例에 대하여 現在까지 단 한건의 行政措置를 취한바가 없었다는 것을 指摘한다.

第27條[技術士補…]에 관하여는 美國이나 日本에서도 이러한 制度를 거친다음에 技術士가 實務經驗을 土臺로한 實用技術에 바탕을 둔 技術士를 輩出하고 있다는 事實을再次 強調한다.

第5章 技術法人條項은 完全削除되었는데 이 것도 政策上 當局이 削除한 것으로 推斷되나 表8과 같이 實定法上의 特定法人 實態를 보면 6件이나 事例가 있고, 技術士의 技術性·社會寄與度·經濟發展寄與度·社會關聯性·市場性·活用性 등 其他를勘案할 때 그 重要性은 다른 特定法人보다 먼저 法制化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立法案에 削除된 것은 21世紀를 指向치 못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이 法에서 削除되었더라도 商法上의 通用을 받을 수 있기는 한것이다.

第6章[技術士管理委員會]은 이 法 第13條[技術士에 관한 協議]機構로 格下되고 말았다. 原案의 第49條[共濟事業團體]와 第50條[技術

仲裁團體]은 當局이 立法理論을 잘 몰라서 削除된 것으로 풀이되나, 이 法 第5條(技術士活用施策)와 連繫되는 것이고, 또 技術仲裁가 職務上(法 第3條)法制化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條項이 立法案上 削除된 것은 立法理論上 相反된다고 보는 것이고, 더욱이 技術仲裁者와 役割上 責任保證保險(共濟事業의 한 種類)에 加入되어야 하는 데도 不拘하고 矛盾되는 점이 많다.

第51條[技術振興基金]條項의 削除는 科學技術振興法 第11條[科學技術基金]에 根據한 立法案이였는데 科學技術振興과 伸張向上에違背되는 處事였다고 볼 수 있다.

特記할 것은 技術士의 活用施策은 母法이 制定公布然后 同施行令의 條文化如何에 따라 技術士活用施策이 連繫多變化할 수 있지 않을까念慮된다.

## 5. 2 技術士法의 改訂補完 希望條項

現在 國會에서 通過된 技術士法案에 대하여 向後 21世紀을 指向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 會員의 祈願은 統合된 單一法이 되기 위해 다음 條項 등이 全面改定時 考慮되기를 希望한다.

改定補完希望條項：資格試驗, 技術士補制度, 技術法人, 技術士管理委員會로의 昇格化, 技術士共濟組合은 共濟組合(혹은 共濟會)\*, 技術仲裁團體(全國的인 技術仲裁士의 役割機構), 個

表-8：國內實定法上의 特定法人－質表(SGK)

NO	法人名稱	根據法의 名稱	該當條項	備 考
1	法務法人	辯護士法	第30條[法務法人의 設立]	
2	醫療法人	醫療法	第41條[設立許可등]	
3	會計法人	公認會計士法	第12條의 2[會計法人의 設立]	
4	社會福祉法人	社會福祉事業法	第7條[法人의 設立認可]	
5	關稅士法人	關稅法	第158條의 2[關稅士法人]	
6	鑑定評價法人*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第7條[鑑定評價法人]	土地評價士와 代替된 것임.

註記：※公認鑑定士(財務部所管)은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거하여 이 法 第6條[法人에 대한 鑑定業의 認可]가 있어서法人(鑑定會社)을 設立하게 되어있다.

人(自然人)도 積金賦金으로 貯蓄獎勵施策을 펴고 있는 요지음 技術士를 위한 技術振興基金制는 民主化時代에 必須의인 立法要件이므로 向後 立法改訂時 條文化되도록 努力臺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 6. 맷 는 말

前述한 바와 같이 技術士의 活用施策은 이 法施行令의 條文化內容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此后 施行令의 制定公布後 다시 檢討하기로 하고, 이른감이 있기는 하나 우리 회원이 모르고 있다고 推定되는 法制內容을 풀이하여 많은 會員의 共感帶形成과 與論의 換起를 위해 적은 것이며, 우리 會員의 努力(法的)如何에 따라 그 活用施策은 많은 變數(可動)로 남아 있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한다.(1992.10.17.脫稿)

## 7. 主要參與文獻 및 資料

1. 法典 玄岩社刊, '92年版
2. 立法技術入門講座 全4卷, ぎょうせい 1991年(平成3年)發刊
3. 「Engineering Law and ICE Contracts」(國 際建設契約約款의 基礎) 日本 土木學會發刊(海外建設 シリーズ6) (1204面)
4. 「Civil Engineering Procedure by ICE」(國

際建設 プロジェクトの進め方)土木學會 發行 (356面)

5. 「建設工事請負契約の解説と判例」 銓木原一郎著 理工圖書 發刊
6. 「建設工事標準請負契約約款集」 建設省建設經濟局建設業課編 大成出版社 1985年 發刊
7. 「建設省工事契約實務要覽」 平成2年版 建設大臣官房地方厚生課監修(1216面) 新日本法規社發刊
8. 「改訂7阪建設業法解説」 建設業法研究會編著(610面) 大成出版社 發刊
9. 「技術用役業(専門)의 技術部門専門分野의 業務範圍 및 主業務」 1980.10.23 制定, 1985.12.10 改訂, 韓國技術用役協會發刊.
10. 「建設工事監理를 위한 標準契約書」 韓國技術用役協會 發刊

「エンシニアリソウファイ確立 のをぬに」(エンシニアリソウファイ委員會最終報告書)抜萃  
『55/EP13, ENAA1980-F1, 昭和56年(1981年) 6月, (財)日本機械工業聯合會, (財)エンシニアリソウ振興協會 發行』

註記: 技術士法(法第4500號) 制定公布되었다.  
(1992.11.25.)

※ 技術士個人의 中心이 되므로 余他既存共濟事業組織의 團體會社 會員制와 다르다.

註記: 最筆給校正時에는 技術士余法案의 國會通過되었으므로 一部補完加筆하였다.  
(1992.11.23)